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규정

제정 : 2015. 04. 03.

개정 : 2022. 08. 05.

담당 : 입학관리팀(02-950-5403)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기능)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제7조(결과의 공시)	제8조(기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학칙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내용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장, 교학처장,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